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판 또는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의 감사·조사〉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46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미애 · 송옥주 · 전재수 · 박균택 · 부승찬 · 전종덕
신영대 · 박희승 · 박선원 · 오세희 · 한정애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 의안번호 : 494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

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① ---- ----- <u>침해할</u> -----. ② <u>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u>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해서는 국정감사를,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¹⁾ 국정감사

1)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

권 및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부여된 권한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는 ① 권력분립의 원칙상 한계, ② 사생활보호와의 관계상 한계, ③ 기본권과의 관계상 한계, ④ 중대한 국가이익과의 관계상 한계가 존재하는데,²⁾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³⁾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한계로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제97조 단서⁴⁾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⁵⁾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988. 8. 5.) 제8조⁶⁾에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

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 「국회법해설」의 구분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한계임. 「국회법해설」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한계를 ① 행정작용과의 관계, ② 수사·공소 업무와의 관계, ③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② 및 ③과 관련된 것이므로 본 검토보고에서도 ② 및 ③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룸.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5)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1980년헌법 하에서 국정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이해된다.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키고자 하였으나, 당시 여당과 법무부장관들이 “검찰이 수사 중이니 헌법 단서 조항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번번이 무산되었다(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2018, p.341).

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한계의 해석⁷⁾과 관련하여,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수사·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6) 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988. 8. 5.)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p.753~754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한계에 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국회에 그 한계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나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석상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그 재판이나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나 국정조사 대상기관이 해당 규정을 원용하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규정의 입법취지상·해석상 인정되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범위 및 한계를 실정법에 명문화하여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명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과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은 재판과 호응하는 용어로서 수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⁸⁾이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⁹⁾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현행과 달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사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관계인 권리보호, 수사 독립성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17

8) ‘계속(繫屬・係屬)’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②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자구 수정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② <u>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u>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등) ② <u>국회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는 그 재판 또는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u>